



부산외대 교수노조 규약

2020년 11월 19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노동조합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노동조합 규약

(2020.07.06. 제정)

(2020.11.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라 하며(약칭 부산외대교수노조), 영문표기는 Professors Union of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약호는 PUBUFS)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학문연구 자유와 교육 독립성을 보장하는 교권을 확립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학사 전반에 관한 교수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선도적 지식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를 개선함으로써, 교수 권익을 신장하고 대학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2. 교수윤리강령의 채택 및 집행
3. 대학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개발
4. 대학의 교육 및 교육과정, 학사운영, 연구 환경의 개선
5. 대학민주화,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6. 대학개혁과 교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7.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8.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와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9.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 사무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내에 둔다.

제5조(단체가입) 조합은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단체에 가입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6조(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한다. 단, 강사는 예외로 한다.

② 조합원 중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교원 중 처장급 이상의 조합원은 당해 보직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되며, 보직 종료와 함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격은 즉시 회복된다.

제7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조합 규약에 찬동하는 유자격자는 조합원 가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정당한 절차에 의해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과정을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8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한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과 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9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때, 조합은 해당 조합원의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0조(포상 및 징계) ① 조합원을 포상 또는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규약에 의거 처리한다.

② 퇴직 및 경조사를 맞이한 조합원에게는 시행세칙에 따라 전별금이나 축(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1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임위원회
4. 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12조(지위와 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3조(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7. 상급 노동단체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8. 합병, 분할과 해산에 관한 사항
9.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14조(소집과 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총회 소집을 건의할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4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시간 장소 및 안건을 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만 있을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위임장 포함),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13조 7~9호에 관한 사항은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규약의 제·개정과 임원의 선출,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5조(지위와 구성) 대의원회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총회에서 수임한 안건
- 2. 임시총회 소집 요청
- 3. 본 규약과 관련된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폐
- 4. 가예산, 예비비 사용 및 전용 승인
-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
- 6.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위원 인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 7. 임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권
- 8. 각종 특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9. 기타 주요 사항

제17조(소집과 회의)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의원회는 매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에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 1.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건의할 때
 - 2. 대의원의 1/4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시간 장소 및 안건을 공지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선출과 임기)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20인 내외로 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3절 상임위원회

제19조(구성과 기능) ① 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상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10인 내외의 상임위원들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제반 업무의 조정과 집행에 대한 점검
2. 조합의 각종 기구와 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3. 총회와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상정
4. 회계연도 본예산 수립
5. 연차별 사업계획 작성
6. 조합의 일상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와 집행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1. 경영감시 분과위원회: 재단과 본부의 대학경영 및 운영 감시, 교비회계 수익의 안정적 확보
추구
2. 처우개선 분과위원회: 급여체계의 현실화 추진, 인사 규정 등 각종 부당 규정 개정노력,
'교권 침해사례 접수센터' 운영
3. 조직 및 홍보 위원회: 조합원 확보를 통한 조직 확대, 쌍방향 웹진 발행
4. 연대 협력 위원회: 직원 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 학내 기구들과의 연대, 대언론
선전 활동

제21조(소집과 회의) ① 상임위원회는 매달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임위원의 과반수 제안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다수결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특별위원회

제22조(구성과 기능) ① 조합의 상시업무 외의 특별 사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대학정책자문위원회 등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선출하거나, 상임위원회에 그 기능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사안에 대한 업무를 다루기 위해 5인 내외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대학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교육의 주요 방향과 내용, 대학본부의 직제 개편, 정원 및 편제 조정, 학과 통폐합 및 신설 등 학과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학본부의 결정에 대하여 조합 내, 외의 학내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 이를 평가하고 조합 차원의 대안을 제시한다.

제23조(회의와 임기) ① 회의 소집과 의결 방식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 ②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위촉 순간부터 해당 사안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24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감사 2인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와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대의원회를 소집·준비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대의원회에 책임을 진다.
4. 사무국장, 상임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5. 공문서의 대표 서명인,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26조(부위원장의 직무)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을 남기고 궐위되었을 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 선출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및 정기총회 보고

제28조(임원의 선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며,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조합원 활동에 참가하고, 2년 이상 정년이 남은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조합 창립 시점에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 선출되며,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당선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임원선거 당해 연도 정기총회 익일부터 차기 임원 선거일까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제30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

② 탄핵 소추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서면발의가 있어야 하고, 소추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되며, 대의원회는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31조(재정운영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당해 연도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② 감사는 6월에 1회 이상 조합의 모든 재원과 내역, 경리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수시로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재원) ①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② 조합비는 매달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며, 그 액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액이나 정률로 책정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33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① 위원장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규약변경 및 해산

제35조(규약변경)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따라 해산 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② 조합이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2조(경과규정) 초대 임원과 상임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에서 정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까지로 한다.

제3조(규약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